

工業所有權情報의 特徵과 現況

〈I〉

成 基 泰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責任研究員〉

目 次

1. 序 言
2. 工業所有權情報의 特徵
 - 2.1 工業所有權情報란
 - 2.2 特許情報의 二面性
 - 2.3 特許情報의 內容의 特徵
 - 2.4 情報管理面에서의 特徵
3. 工業所有權情報의 發生經路
 - 3.1 特許制度和 情報發生
 - 3.1.1 出願公開制度採用國家
 - 3.1.2 出願公告制度採用國家
 - 3.1.3 上記以外的의 主要國家
 - 3.2 實用新案制度和 情報發生
 - 3.3 意匠制度和 情報制度
4. 工業所有權情報의 發生狀況
 - 4.1 一次資料의 發生狀況
 - 4.1.1 外國公報 및 明細書
 - 4.1.2 外國單行本
 - 4.1.3 外國雜誌
 - 4.2 二次資料의 發生狀況
 - 4.2.1 抄錄資料
 - 4.2.2 索引資料
 - 4.2.3 分類資料
5. 外國特情報機關의 活動狀況
6. 結 言

① 序 言

科學技術의 急速한 發展과 研究開發에 從事하는 人口의 急激한 增加에 따라 最近 科學技術分野의 各種 文獻資料가 全世界의 年間 300萬件씩 發行되고 있으며 그 量이 指數函數의 增加되어 8~12年마다 倍加되는 爆發的인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특히 特許文獻의 發行件數도 每年 增加하여 全世界의 年間發行件數는 約 100萬件以上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主要國(美, 英, 佛, 獨, 日, 소련, 스위스, 벨지움)에서의 特許發行件數는 50萬件以上이고, 日本만 하더라도 1981年 한해 동안 特許, 實用新案을 합하여 公開(公告포함)된 件數가 45萬餘件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主要國들의 過去의 累積分은 約 1,000萬件以上이라고 한다. 이러한 情報量의 激增은 情報의 購入, 整理 등의 負擔增大, 保管스페이스의 狹隘化, 調査效率의 低下 등 特許情報의 管理體制를 根本的으로 흔들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持續的인 技術革新의 結果 工業所有權에 대한 出願이 1968年 16,488件(處理件數 11,416件)에서 1980年 37,261件(處理件數 35,966件)으로 量的 및 質的인 增加現象을 나타냈고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70年代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制度는 經濟發展의 大前提가 되는 技術開發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면서 國內工業所有權制度의 內實化 그리고 國際化에 段階的인 接近을 試圖하면서 漸進的인 發展을 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78年 3月 特許情報 및 資料確保를 위한 國際特許資料센터(INPADOC)와의 資料交換協定締結, 1979年 3月 UN의 專門機構이기도 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의 加入, 1980年 5月 工業所有權相互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에의 加入 그리고 特許法 등의 改正 등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國內外的인 工業所有權制度 및 科學技術의 進步發展에 따라 發生되는 一般技術情報 및 工業所有權情報量의 過多現象 그리

고 專門分野의 細分化, 境界領域의 擴大, 難解한 外國語로 發生되는 文獻의 增加로 인한 言語의 障壁 등 오늘의 工業所有權情報의 諸般與件을 勘案할 때 先進國의 工業所有權정보를 蒐集, 分析, 評價하여 産業體에 迅速히 提供하는 시스템의 開發은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들에 있어서는 아주 重要하며 時急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特許情報管理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資料入手에 관하여 記述코져 하는데 最近 企業體 및 研究所에서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KIET)과 같은 專門情報機關을 利用하여 資料를 入手하는 한편 基本의인 것 또는 特殊한 것은 直接 外國의 專門情報機關 또는 特許廳으로부터 入手하는 경향이 많아졌으므로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記述하려고 하며 또 明細書 및 公報 以外에 工業所有權에 관한 雜誌 및 單行本에 대한 問題도 없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簡略히 紹介코져 한다.

② 工業所有權情報의 特徵

2.1 工業所有權情報란

工業所有權情報란 工業所有權(Industrial Property)에 關聯된 情報로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審決公報외에 判決, 統計, 制度改正의 動向, 侵害事件에 관한 뉴스 등을 말하며 이외에 出願拒絕査定, 取下, 拋棄, 無效로 된 特許 등의 出願書類와 노우하우 등의 非公式(非公開) 情報도 包含하는데 꼭 記錄情報에만 限定되지는 않는다. 特許情報서비스機關의 特許調査와 企業體의 特許情報管理(Patent documentation)에서 問題로 되는 것은 이들중 特許, 實用新案公報(또는 明細書) 등의 記述화된 特許技術情報(狹義의 特許情報)들인데 그 理由는 그것이 企業經營에서 특히 重要하며 또 每年 發行되는 情報量 및 蓄積量이 多大하다는 것 그리고 그 內容이 複雜하며 그 技術水準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工業所有權資料란 通常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情報中 종이, 마이크로필름, 磁氣테이프 등으로 記錄된 公式(公開) 情報과 이것을 分類, 整理하는 基準을 나타내는 모든 資料들을 말하는데 보통 一次資料(特許明細書, 特

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公報), 二次資料(特許實用新案, 抄錄, 索引), 分類資料(分類表, 分類定義, 分類索引)로 大別한다.

2.2 特許情報의 二面性

特許정보는 權利정보와 技術정보의 二面性을 가지고 있다. 즉 特許公報(韓國, 日本)에 대해서 보던 圖面의 간단한 說明, 發明의 詳細한 說明, 圖面 및 發明의 名稱 등은 技術정보이며 書誌의事項(出願人名 등)과 特許請求의 範圍는 權利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技術정보는 技術全般에 관한 情報로 自己가 알고자 하는 技術分野에 어떠한 技術이 存在하는가를 示唆하고 있다. 技術정보는 公報類만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나 公報類는 技術정보 全體중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公開公報는 出願後 1年 6個月만에 公開되기 때문에 그 利用價値는 대단히 높다.

2.3 特許情報의 內容의 特徵

特許정보는 다른 一般技術정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2.3.1. 一定한 技術水準을 넘은 것으로 즉 情報의 質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審査官에 의하여 嚴格한 審査를 거친 公告公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3.2. 特定分野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全技術分野에 걸쳐 있고 또 世界의 技術水準을 把握할 수가 있다.

2.3.3. 公報類는 政府發行이며 書誌的 事項이 統一되어 있다(世界各國의 特許廳間의 約束으로 書誌的 事項에 관해 統一된 番號(例 (21) 出願番號, (22) 出願日)가 붙여져 있다).

2.3.4. 技術內容이 具體的으로 記載되어 있다(特許公報 등의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는 技術의 背景, 問題點, 解決方法 등이 記載되어 있다).

2.3.5. 모든 情報에 分類가 붙여져 있다(特許公報에는 技術內容을 나타내는 分類(IPC) 國際特許分類)가 붙여져 있다).

2.3.6. 情報가 蓄積되어 있어 遡及調査가 容易하다.

2.3.7. 企業의 技術動向을 쉽게 알 수가 있다(어느 企業의 特許出願傾向 및 內容調査에 의하

여 그 企業의 技術動向을 把握할 수가 있다.

2.3.8. 入手가 容易하다.

2.3.9. 抄錄 및 索引 등의 二次文獻이 豊富하다.

2.3.10. 技術이 重複되지 않는다(特許出願되는 技術은 最新의 것이고 審査를 거쳐 公告된 것에는 同一한 것이 없다.

2.4 情報管理面에서의 特徵

特許情報은 또 情報管理面에서도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2.4.1. 企業活動과 不可缺하다; 特許情報은 今日的 企業活動에 있어서 不可缺한 것이며 따라서 그 管理(蒐集, 整理 및 提供 등)는 企業의 必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4.2. 繼續性이 必要하다; 特許情報은 1회의 蒐集으로 充分한 것이 아니고 先行技術調査를 時點으로 權利調査, 企業動向調査 등 언제나 監視調査(Current Awareness) 및 溯及調査(Retrospective Search)가 要請된다.

2.4.3. 即時性과 完全性이 要求된다; 特許情報에 한하는 것은 아니나 情報은 即時性이 要求되며 특히 特許情報은 그 蒐集過程에서 1件만 빠지더라도 後日 큰 結果를 招來할 수 있으므로 完全性이 要求된다.

2.4.4. 情報量이 많다; 特許情報을 採用하고 있는 100餘個國에서 每年 發行되는 特許明細書의 量은 100萬件을 넘기 때문에 蓄積情報의 保管 및 檢索시스템의 改善이 不可避하다(表 1).

2.4.5. 利用目的이 多目的이다; 特許情報의 利用目的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이므로 각각의 目的에 맞는 管理가 必要하다.

〈特許情報의 利用目的〉

研究開發을 위한 資料蒐集	27.4%
出願을 위한 事前調査	13.4
異議申請 또는 審判請求	10.2
新製品開發을 위한 他人의 權利有無	21.7
特定企業의 出願動向	7.2
實施契約을 위하여	1.4
輸入을 위한 國內의 權利調査	1.0
輸出을 위한 相對國의 權利調査	0.2
拒絶理由通知에 대한 意見書作成用	0.5

委託 14.4

其他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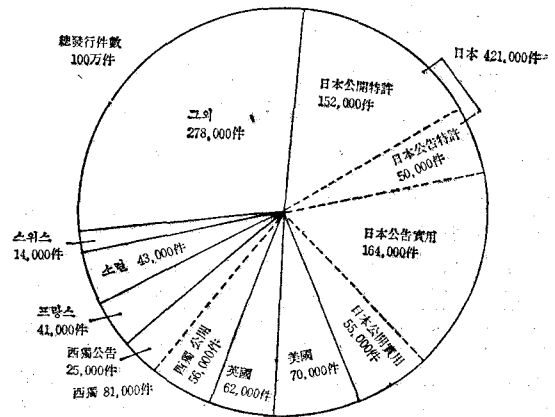
—1978. 9. 日本特許廳公衆閱覽室利用者 앙케이트 調査

③ 工業所有權情報의 發生經路

3.1 特許制度和 情報發生

特許情報은 特許制度로부터 생겨난 情報이며 特許制度란 新技術인 發明을 公開한 者에게 그 報償(reward)으로서 特許權이라고 하는 持占의 權利를 一定期間 주어서 發明을 保護·育成하며 아울러 그 活用을 圖謀하고자 하는 制度인 바 그 國家의 特異한 特許制度에 따라 特許情報의 發生量 그리고 形態 및 形式이 다를 수가 있고 特許情報의 利用 예를 들면 速報性에 있어서의 價値가 差異가 나게 된다. 그래서 一般적으로 特許情報의 利用面으로부터 世界의 特許制度를 다음과 같이 大別하고 있다.

表 1. 世界各國 特許資料의 年間發行量(1976年)



- 出願公開制度를 採用하는 國家
- 無審査制度를 採用하는 國家
- 上記以外の 主要國家

3.1.1. 出願公開制度採用國家

技術의 急速한 進歩와 發展에 의한 文獻의 急激한 增大 및 特許出願의 增大에 의하여 世界의 特許制度는 60年代初에 큰 變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從來의 審査主義와 같은 特許制度인 경우에는 特許出願을 短時間內에 處理치 못하여

表 2. 公開制度를 採用하는 國家

1982年 1月 現在

國名	과리條約	特許法	出願人의資格	審查	新規性判斷準	存續期間			出願(異議申請)公告	實施義務	PCT	EPC	公開制度	審査請求	其他
						起算日	期間(年)	延長(年)							
오스트레일리아	○	○	◎	○	△	完	16	5	3	3	◎	—	出願日로부터 18個月	5年 完全明細書 (提出日로부터)	Petty patent (1979年 7月 1日로부터)
네덜란드 (1978年)	○	○	◎	○	○	出	20	無	4	無	◎	◎	〃	7年 (出願日로부터)	
西獨 (1981年)	○	○	◎	○	○	出願의翌日	20	無	3 特許付與日	無	◎	◎	〃	7年 (出願日로부터)	植物特許 (1977年)
프랑스 (1978年)	○	○	◎	○	○	出	20	無	無	3	◎	◎	〃	18個月 (出願日 또는 優先日로부터)	
日本	○	○	◎	○	□	公	15	無	2	3	◎	—	〃	7年 (出願日로부터)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20年限度
英國 (1977年)	○	○	◎	○	○	出	20	*	無	無	◎	◎	〃	新規性: 出願日로부터 12個月 實體: 公開日로부터 6個月	○豫備審査, 調査是 出願日로부터 1年以內에 請求 ○公開後情報 提供 ○國內 優先制度
스웨덴 (1978年)	○	○	◎	○	○	出	20	無	3 特許日로부터 3年 出願日로부터 4年	無	◎	◎	〃	×	

① 出願人의 資格項中 ◎은 發明者 및 承繼人이 出願할 수 있는 것을, ○은 發明者만이 出願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은 例外規定이 있는 것을 表示.

② 新規性判斷基準의 項中 ○은 「內外國公知公用·內外國刊行物」을 □은 「國內公知公用·內外國刊行物」을 △은 「國內公知公用·國內刊行物」을 각각 基準으로 하는 것을 表示.

③ PCT 및 EPC 項中 ○印은 署名國, ◎印은 批准國, △印은 加入國, ×은 未加入을 表示.

* 存續期間의 延長特別한 경우는 5年, 가장 異例的인 경우(예를 들면 特許權者가 當該 特許權을 가지고 充分한 報酬를 받지 못한 경우)은 10年이며 當該 特許權의 存續期間滿了 3年 6個月~12個月前에 延長願를 提出해야 한다.

④ 國名뒤의 年度表示는 最近의 特許法改正年度임.

出願의 滯貨를 가져왔고 그 結果 技術의 進歩發展에 貢獻하는 機能의 價値가 稀薄케 되었으며 또 重複研究 등에 의한 時間的 및 經濟的 損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弊害에 대해 생겨난 制度가 公開制度(system of laying open to public inspection)이며 採用國家는 每年 增加하여 처음에 호주(1962年)가 實施한 후 네덜란드(1964年), 西獨(1968年), 노르딕(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필란드), 共通特許法(1968年), 프랑스(1969年), 日本(1971年), 브라질(1973年)

英國(1978年), PCT(1978年), EPC(1978年), 이탈리아(1979年)가 實施하고 있다. 이 公開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들은 모두 出願日(優先權主張을 하는 出願은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8個月에 出願을 公開하고 있다(表 2).

다음에 主要國들의 特許節次와 이에 따른 情報發生에 대해 간략히 記述한다. —계 속—